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식재산 정책 영역이 사법·지방행정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추가하여 지식재산 정책추동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회를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직급을 위원회 안건상정 검토 및 이견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하여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4조 중 “제8호부터 제11호”를 “제6호부터 제11호”로 개정함(안 제4조)
- 나. 제6조제1항 각 호를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집행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로 개정함(안 제6조)
- 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7.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창출”을 “전략기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를 “진흥성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활용”을 “보호·집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반”을 “활용·사업화”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u>제8호</u> 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 ----- <u>제6호</u> ----- ----- ----- -----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1. 지식재산 <u>창출</u> 전문위원회	1. ---- <u>전략기획</u> -----
2. 지식재산 <u>보호</u> 전문위원회	2. ---- <u>진흥성장</u> -----
3. 지식재산 <u>활용</u> 전문위원회	3. ---- <u>보호·집행</u> -----
4. 지식재산 <u>기반</u> 전문위원회	4. ---- <u>활용·사업화</u> -----
5. <u>신지식재산</u> 전문위원회	<u><삭 제></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 ----- -----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공무원</u>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1. ----- ----- <u>공무원</u>
2. (생략)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8180